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인재환 소유물건(2024타경35864)
(경매7계)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인진

감정평가서번호: 새한2404-1-03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새한감정평가사사무소

(아파트)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길승균

(인)

감정평가액	칠억칠천오백만원정 (₩775,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인진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7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인재환 (2024타경35864)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04.04	2024.04.03 ~ 2024.04.04	2024.04.04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아파트	1세대 이	아파트 하	1세대 여	- 백	775,000,000
	합계					₩77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로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 부천범박힐스테이트5단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30-27)					
단지현황	토지의 지목	대	단지의 규모	8개동, 836세대	건폐율(%)	16.19
	토지의 용도지역	3종일반주거 지역	층수 (해당동)	1/20	용적률(%)	273.87
	건물의 주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주용도	공동주택	사용승인일	2003-06-27
평가대상	506동 4층 401호					
	전유면적 (㎡)	주거공유면적 (㎡)	합 계 (㎡)	대지권 면적 (㎡)	용 도	
	140.94	21.7826	162.7226 (49.2형)	62.1338	아파트	

3. 감정평가의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시점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상 물건의 현황 및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4년 4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5. 기타사항

가. 귀 원의 요청에 따른 건물과 토지(대지권)의 배분가격은 건물과 토지(대지권)를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을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배분비율에 의거하여 배분하였음.

나. 본건의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외관조사, 건축물현황도, 유사물건의 평가사례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현황으로 판단하였음,

다. 본건의 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로서, 동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대지권)와 건물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begin{aligned} \text{평가단가(원/㎡)} &= \text{거래사례가격(원/㎡)} \times \text{사정보정치}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치} \\ \text{평가액(원)} &= \text{단가(원/㎡)} \times \text{면적(㎡)} \end{aligned}$$

나. 본건 구분건물은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다른 평가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여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생략하였음.

2.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인근지역에서 감정인이 포착한 유사 사례는 다음과 같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가.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기 호	소재지	동.호수	전유 면적(㎡)	대지권 (㎡)	거래시점	거래가액 (원)
1	범박동 151-*	50*동 170*호	122.8	54.1366	2023-12-04	735,000,000 (@ 5,895,000)
2	범박동 151-*	50*동 170*호	140.94	62.1338	2023-11-25	750,000,000 (@ 5,321,000)
3	범박동 151-*	50*동 120*호	140.94	62.1338	2023-10-17	750,000,000 (@ 5,321,000)
4	범박동 151-*	50*동 20*호	122.8	54.1366	2023-12-14	708,000,000 (@ 5,765,000)
5	범박동 151-*	50*동 40*호	140.94	62.1338	2023-10-05	768,000,000 (@ 5,449,000)
6	범박동 151-*	50*동 170*호	140.94	62.1338	2023-05-04	780,000,000 (@ 5,534,000)

* 지번, 동호수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였음.

* 자료: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나. 인근지역의 평가사례

기 호	소재지	동.호수	전유 면적(㎡)	기준시점	평가액(원)	평가 목적
1	범박동 151-*	50*동 170*호	140.94	2021-09-01	884,000,000	공매
2	범박동 151-*	50*동 250*호	122.8	2023-02-09	760,000,000	시가참고
3	범박동 151-*	50*동 180*호	122.8	2023-04-07	830,000,000	경매

* 지번, 동호수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였음. (자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다. 시세조사 자료

본건과 유사한 유형의 아파트에 대한 시세 조사기관의 자료는 다음과 같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단위 : 만원)

시세 기준연월	매매가			전세가		
	하위평균	일반평균	상위평균	하위평균	일반평균	상위평균
202403	75,000	78,500	82,000	41,000	42,500	44,500
202401	75,000	78,500	82,000	41,000	42,500	44,500
202311	76,500	79,000	82,000	40,500	42,500	44,500
202309	77,500	80,500	83,500	40,500	42,500	44,500
202307	82,000	84,000	86,000	38,000	40,000	42,000
202305	84,000	86,000	88,000	38,000	40,000	42,000
202303	84,000	86,000	88,000	38,000	40,000	42,000
202301	84,000	86,000	88,000	39,000	42,000	45,000

(자료 : KB아파트 시세)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산출

가. 비교사례의 선정

-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등기된 거래사례 기호5.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 거래사례의 전유면적당 단가 : 5,449,000원/m² (거래가액/전유면적)

나. 사정보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사정보정이란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사례로 선정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치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특별한 사정의 개입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1.000)

다. 시점수정

-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치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시점수정함.
- 매매가격지수 (경기도 부천시)

구 분	시점수정치	비 고
거래사례 5.	1.00854	사례의 매매당시의 적용 지수 : 93.7 본건의 기준시점의 적용 지수 : 94.5 시점수정치 산출 : $94.5/93.7 \approx 1.0085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 기호 1 >

조건	항 목	비교 사례	본건	비 고
외부 요인	가로의 폭, 구조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획지의 형상 등, 인근환경 등	1.00	1.00	유사함.
건물 요인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건물의 규모 및 층수 등	1.00	1.00	유사함
개별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소음 등	1.00	1.00	유사함.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유사함.
비 교 치		1.000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가격 산출

- 시산 가격

본건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본건 면적(㎡)	시산가격 (원)
1	5,449,000	1.000	1.00854	1.000	140.94	775,000,000

4. 시산가격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

- 상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평가한 시산가격이 인근의 평가사례, 인근의 거래사례, 부동산 시세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가격 결정함.

- 감정평가액 결정 : 기호1) ₩ 775,000,000-

(아파트)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소재 시온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다세대, 학교 및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소새울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의 20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2003-06-27 임.
외벽: 콘크리트 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등
창호: 샷시창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 건축물 현황도 별첨)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아파트)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대체로 가장형의 토지이며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약 25m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서측,북측,남측으로 약 10~20m 정도의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로1류(폭 20m~25m)(접합), 종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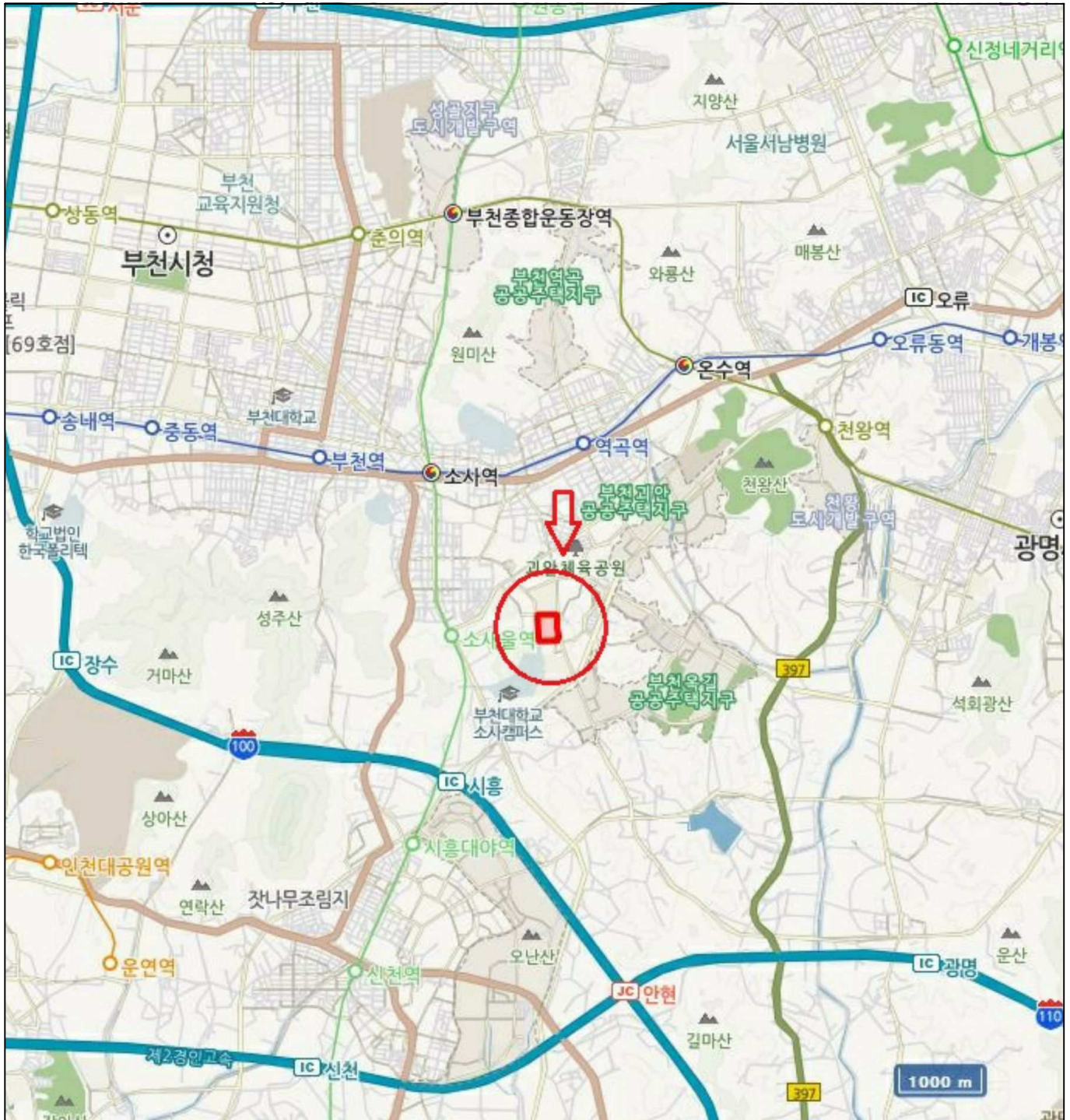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차 사항은 미상임.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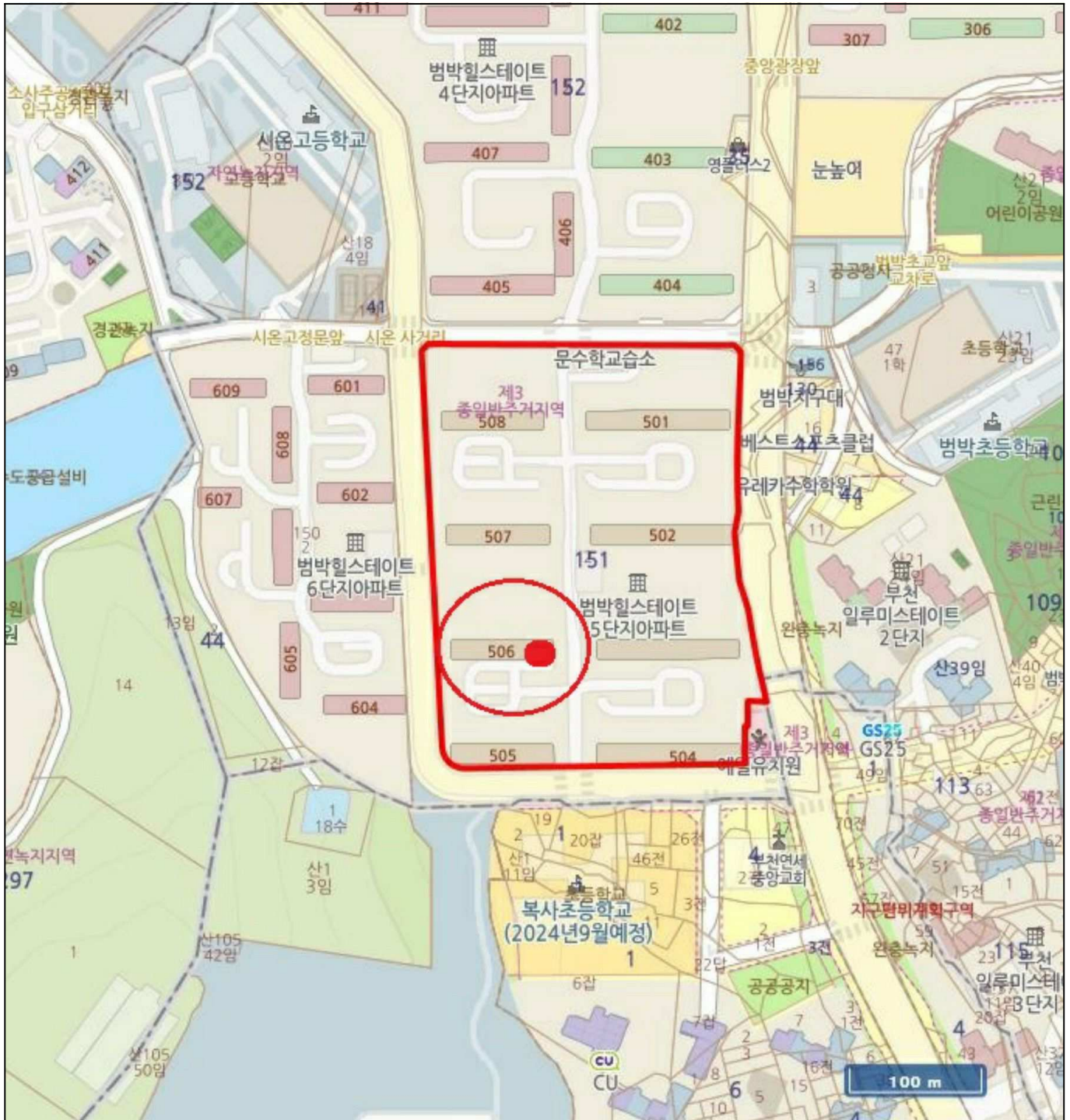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 부천범박힐스테이트5단지 506동 4층 401호
-----	---



상세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 부천범박힐스테이트5단지 506동 4층 4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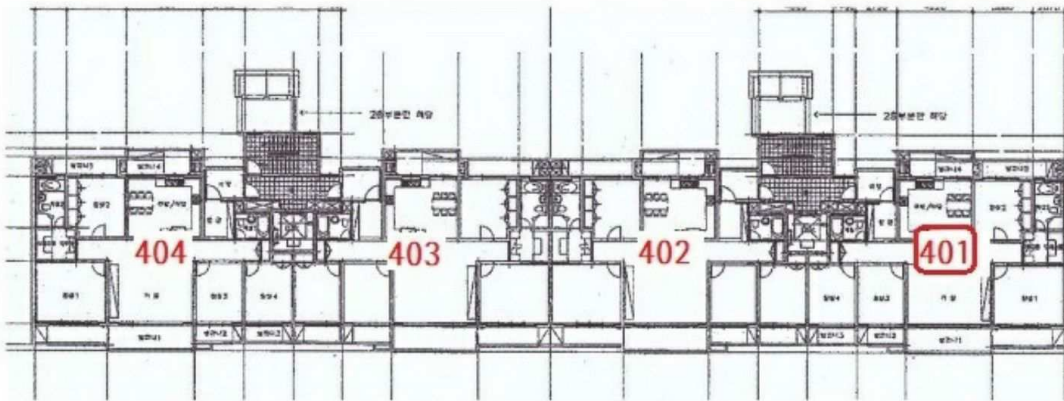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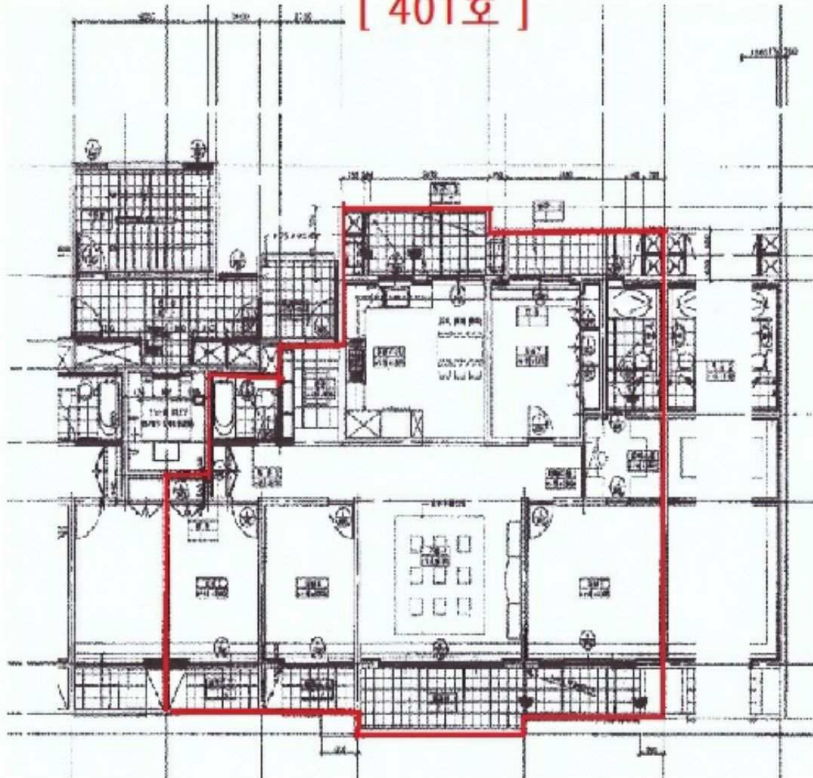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 부천범박힐스테이트5단지 506동 4층 401호

< 4층 호별배치도 >



[401호]



사 진 용 지



본건 건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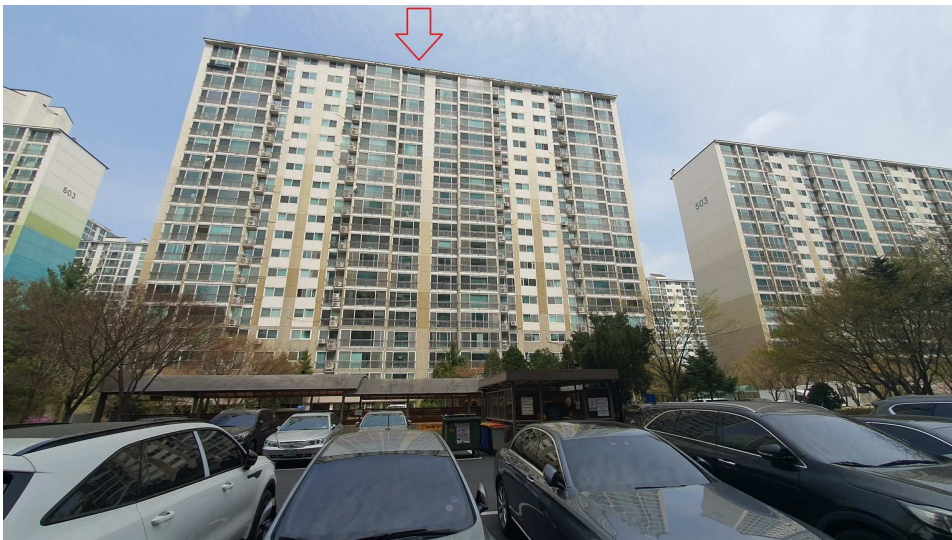


공동출입구

사 진 용 지



본건(401호)



주위환경1(남측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주위환경2(북측에서 촬영)